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상권과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1년 7월 25일까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국제협력과”를 “제도약정정책과”로, “재기지원과”를 “국제협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기업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57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 수립 및 보고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4.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
6.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7.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운용개선

8.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
 9.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10.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2.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및 감독
 13.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4.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5.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16.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8.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19.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9조제8항(중전의 제4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제9조제9항(중전의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제9조제15항(중전의 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기지원과장”을 “재도약정책과장”으로 한다.

14.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직제 제13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창업진흥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벤처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⑨ 창업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0.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2.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4.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설립·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중전의 제2항) 중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인

력육성과 및 미래산업전략팀”을 “미래산업전략팀,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및 기술보호과, 인력육성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3항)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

18.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추진

제10조제7항(중전의 제3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4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창업정보의 제공·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4.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법인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3항제3항제18호, 제29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0항(중전의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제품 제작 등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 촉진 지원

제10조제10항(중전의 제6항)제1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의2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상생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2 및 제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상생협력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23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8호의3 및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69”를 “17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1”을 “128”로 한다.

별표 5의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9”를 “7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2”를 “151”로 한다.

별표 7의 조직 1) 및 조직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조직 3)을 조직 3)으로 하며, 같은 표 조직 4)를 조직 4)로 하고, 같은 표 조직 5)부터 조직 7)까지를 각각 조직 5)부터 조직 7)까지로 하며, 같은 표 조직 4)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7월 25일”을 “2021년 7월 2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3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7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3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7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 ----- <u>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u> ----- ----- -----.
<u><신 설></u>	② <u>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③ <u>정책기획관은 직제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② ~ ⑦ (생 략)	④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u>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u>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u>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u>

급으로 하고, 중소기업정책관 · 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 일자리정책과, 정책평가과, 통계분석과, 국제협력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판로정책과, 재기지원과,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 및 지역특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 · 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다.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 · 글로벌성장정책관 ·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⑥ -----

----- 재도약정책과 -----

----- 국제협력과 -----

-----.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제52호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 수립 및 보고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

추진

4.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

6.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의 작성

7.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

괄 및 조정

8.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운용

개선

9.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

10.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

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

립·시행

11.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3.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및

감독

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

여 실장을 보좌한다.

14.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16.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7.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18.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률」의 운용

20.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21.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
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2.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2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직제 제
12조제3항제6호, 제21호부터 제
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
을 보좌한다.

⑤ 지역기업정책관은 직제 제12
조제3항제57호부터 제75호까지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21. (생략)

⑤ 정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⑥ (생략)

<신설>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 -----
-----.

1. ~ 20. (현행과 같음)

21.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⑨ -----
-----.

1.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⑩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 수립 및 보고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
추진

4.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

6.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의 작성
7.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운용
개선
8.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
9.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
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
· 시행
10.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2.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및
감독
13.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4.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5.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16.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률」의 운용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⑧ ~ ⑩ (생략)

⑪ 재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⑫ ~ ⑭ (생략)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18.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19.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⑫ ~ ⑭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⑪ 재도약정책과장-----
-----.

1. ~ 25. (현행과 같음)

⑯ ~ ⑰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
총괄과, 기술창업과, 창업촉진
과, 창업생태계조성과, 벤처혁
신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회
수관리과, 기술정책과, 기술개
발과, 기술보호과, 인력육성과
및 미래산업전략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
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서기관·

② 직제 제13제1항에 따라 창업
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
신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창업진흥정책관은 직제 제13
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④ 벤처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3
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⑥ -----

----- 미래산업전략팀, 기술
정책과, 기술개발과 및 기술보
호과, 인력육성과-----

----- 팀장-----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 다.	----- ----- ----- --.
③ 창업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⑦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창업정보의 제공·관리계획 의 수립·시행</u>	<삭 제>
9의2. <u>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삭 제>
10. <u>법인설립 관련 온라인시스 템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1. <u>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u>	<삭 제>
12. <u>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 소화에 관한 사항</u>	<삭 제>
<신 설>	17. <u>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u>
13. ~ 17. (생 략)	9. ~ 13. (현행 제13호부터 제1 7호까지와 같음)
<신 설>	18. <u>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추진</u>
18.·19. (생 략)	14.·15. (현행 제18호 및 제19 호와 같음)
21. (생 략)	16. (현행 제21호와 같음)

22. (생략)

④ 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

8.·9. (생략)

<신설>

11. ~ 13. (생략)

<신설>

<신설>

14. (생략)

<신설>

⑤ 창업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
본계획의 수립·시행

19. (현행 제22호와 같음)

⑧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7.·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13. 창업정보의 제공·관리계획
의 수립·시행

9. ~ 11. (현행 제11호부터 제1
3호까지와 같음)

14.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15. 법인설립 관련 온라인시스
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14호와 같음)

16.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
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3
항제3항제18호, 제29호부터 제5
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
을 보좌한다.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추진
 11.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2.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4.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 ⑥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u>1.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설립·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2. 시제품제작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3.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6. ~ 10. (생략)</u> <u>11. 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u> <u>13. (생략)</u> <u>14. 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1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6. (생략)</u> <u><신설></u>	<u>1. 시제품 제작 등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2. ~ 6.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u> <u><삭제></u> <u>7. (현행 제13호와 같음)</u> <u><삭제></u> <u><삭제></u> <u>9.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u> <u>8. (현행 제16호와 같음)</u> <u>⑨ 창업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에</u>
--	--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0.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2.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4.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⑦ ~ ⑨ (생략)

⑪ (생략)

⑫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설>

18. (생략)

18의2. (생략)

19. (생략)

20. ~ 27. (생략)

⑬ · ⑭ (생략)

및 설립·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 ⑬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⑮ (현행 제11항과 같음)

⑯ -----
-----.

1. ~ 17. (현행과 같음)

18.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21. (현행 제18호의2와 같음)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22. ~ 29. (현행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⑰ · ⑱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⑮ (생략)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⑭ (현행 제15항과 같음)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상생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부터 제22호까지의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상생협력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23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8호의3 및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

② ~ ⑩ (생략)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③ (생략)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

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⑬ (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의 정원 중 2명(방호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 <u>169</u> ·	· · <u>172</u> ·	+3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	<u>131</u> · ·	<u>128</u> · ·	-3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u>69</u>	· · <u>70</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52</u>	<u>151</u>	-1
· ·	· ·	· ·	